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 2015 -58호

『서울특별시 강북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

『지방자치법』 제66조의2, 『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』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1월 26일  
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

### 1. 제정이유

강북구민대상에 강북구의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개선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환경상을 신설하여 환경보전운동의 생활화와 환경보전의식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강북구민대상에 “환경상”을 신설. (안 제3조)
- 나. “환경상”의 심사기준 신설 (안 제3조의2제7호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15. 11. 26. ~ 12. 1.)

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(참조:의회사무국 의사팀, 전화 901-4521, FAX 901-4519)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(찬·반여부와 사유)
- 나. 성명(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